

의안번호	2213133
의 퇴 인	이연희의원
회 답 일	2025.11.17.
추계번호	25B52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제4항 신설 (보조 또는 용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21조의4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4.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한정한다)	재량규정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주차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3	안 제21조의5 신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21조제4항 신설 (보조 또는 용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1조의4제1항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미대상: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사업([참고자료])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이 사업의 위탁가능 기관을 추가하면서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1조의5 신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안 제21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비용 지원 기준과 범위, 기간, 지원이 필요한 물량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21조의5 신설)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간 주차장 이용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의 정보제공이 가능한 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¹⁾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향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지방자치단체의 수, 시스템 구

1)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는 124개소(국토교통부 제출자료)로 실시간 주차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로는 서울시주차정보시스템, 수원시 공영주차장 통합 홈페이지, 안양시 통합주차포털 등이 있음

축·운영 계획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될 것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추진배경) 전국에 분산된 주차장 공간정보를 국가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개방하여 교통혼잡, 주차난 해결 및 주차산업 발전 유도
 - 민간기업 등은 주차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개별 주차장과 협의가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3년 주기 실태조사·주차장 인허가 업무 등으로 전체 주차장 정보 관리중
- (사업내용) 전국 주차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주차정보 개방
 - '20.12월 주차정보시스템 ISP(정보화 전략계획) 이후 올해까지 건축행정시스템*, 지자체 주차관리시스템** 및 지자체 소유 주차장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 (건축행정시스템) 전국 공·민영 부설주차장 정보(주소, 전체면수, 주차장 형태 등) 수집
 - (지자체 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한 123개 기초지자체 중 107개 연계완료(실시간 주차면수 등)
- (사업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차장법」 제21조의4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 (사업예산)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본예산 (단위:백만원)	563	2,680	193	193	193	697	313

- 2020년 :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
- 2021년: 국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비
- 2022~2024년: 국가-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연계비
- 2025년: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연계비
- 2026년(안): 유지관리 및 연계비